

#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'95. 8

제출자 : 화순군수

## 1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.

## 2. 개정근거

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, 제3항, 제4항

## 3. 주요내용

가.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함 (조례 제4조)

나.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함.

- .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(도로.하천등)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
- .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

다.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400㎡에서 700㎡로 확대 (조례 제39조의2)

라.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(조례 제39조의3)

마.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함(제56조) : 1급관사에 한함 → 1,2급 관사에 한함.

- . 보일러 운영비
- . 응접셋트, 커텐 등 기본장식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
- . 전기요금, 수도요금, 아파트 관사일 경우에 공동관리비

##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37조 제1항중 "시장.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"를 "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전 까지"로 하며 "공유재산의 취득.처분 및 관리를"을 "공유재산을 취득.처분을"로 하고"변경계획을 작성하여"를"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 까지 "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 
"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)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(도로, 하천등)으로 취득(보상취득)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과 협의하여야 한다.  
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
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제39조의2 제1호중 "기타지역에서는 400㎡이하의 토지"를 기타지역에서는 700㎡이하의 토지"로 한다.

제39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9조의 3 (공유재산매각승인)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51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

3. 3급관사: 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

제56조 제3호 및 제4호, 제5호, 제7호,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보일러 운영비(단, 1급 . 2급관사에 한함)
4. 응접셋트,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(단, 1급 . 2급관사에 한함)
5. 전기요금(단, 1급 . 2급관사에 한함)
7. 수도요금(단, 1급 . 2급관사에 한함)
8. 아파트 관사일 경우에 공동관리비(단, 1급 . 2급 관사에 한함)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.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4조(중요재산) ①지방자치법 제35조 제 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 유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 산을 말한다.  1. 1건당 예정가격 5억원이상(구가 있 는 일반시는 5억원이상, 기타 시·군 은 2억5천만원 이상)  2.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제곱미터 이상(구가 있는 일반시는 1만제곱미 터이상, 기타 시·군은 5천제곱미터 이상)  ②토지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면 적 이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.	제4조 (삭제)
③중요재산의 한계 기준으로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.  1. 동일한 취득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 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 2.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일 경우	

현 행	개 정 (안)
3.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	
4. 당해 재산에 인접 또는 부대시설로 되어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 우	
5.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당초 동일목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 는 경우	
6. 기타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재산의 구 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	
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법 제77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·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변경계 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한다	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----- ----- 군수가 익년도 예 산편성전까지 ----- ---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을 --- --- -----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 을 편성하기 전까지 ---.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천법 제7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부지 취득과 동 재산을 양여목적에 따라 처 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	② (삭제)

현 행	개 정 (안)
<p><u>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·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, 지목, 면적과 가격을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일괄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③ (삭제)</p>
<p>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</p>	<p>④ ----- 다만, 공유 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 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야 한다.</p>
<p>( 신 설 )</p>	<p>제37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)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 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( 도로, 하천등)으로 취득(보상취득) 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39조의2(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경우)      영 제95조의 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 단체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(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200㎡이하, 시지 역에는 300㎡이하, 기타 지역에서는 400㎡이하의 토지)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</p> <p>2. ~ 3. ( 생략 )</p> <p>( 신 설 )</p>	<p>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39조의2(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경우)</p> <p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기타 지역 에서는 700㎡이하의 토지 ----- -----</p> <p>2. ~ 3.(현행과 같음)</p> <p>39조의3(공유재산 매각승인)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51조(관사의 구분) 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1급관사: 군수관사 2. 2급관사: 부군수관사 3. 3급관사: 1급 및 2급 실·과장관사 <u>이외의 관사</u></p>	<p>제51조(관사의 구분) - - - - - - - - - - .</p> <p>1. - - - - - 2. - - - - - 3. 3급관사: 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</p>
<p>제56조(관사운영비의 부담) 관사의 운영 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 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생략) 3. 보일러 운영비(단, 1급관사에 한하되 지방 4급, 부군수관사 포함) <u>4. 응접셋트,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 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(단, 1급 관사에 한함)</u> 5. 전기요금(단, 1급관사에 한함) 6. (생략) 7. 수도요금(단, 1급관사에 한함) 8. 아파트 관사일 경우에 공동관리비 (단, 1급관사에 한함)</p>	<p>제56조(관사운영비의 부담) - 1. ~ 2.(현행과 같음) 3. - - - - - (단, 1급·2급관사에 한함) 4. - (단, 1급 · 2급관사에 한함) 5. - - - - (단, 1급·2급관사에 한함) 6. (현행과 같음) 7. - - - - (단, 1급·2급관사에 한함) 8.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(단, 1급·2급관사에 한함)</p>

# 검 토 보 고 서

## □ 조례명

-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 □ 주요내용

### 1. 중요재산의 범위 (안 제4조)

- .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
  - ─ 건당 예정가격이 2억 5천만원 이상
  - ─ 토지의 경우 5천 제곱미터이상 등

### 2.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 신설 (안 제37조의 2)

- .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 (도로, 하천 등)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,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통보

### 3.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 범위 확대 (안 제39조의 2)

- ─ 현 행 : 기타지역 400㎡ 이하 토지
- ─ 개 정 : 기타지역 700㎡ 이하 토지

### 4. 공유재산 관리처분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 승인규정 신설 (안 제39조의 3)

### 5. 관사운영비 부담 재조정 (안 제56조)

전기, 수도요금 및 아파트 관사인 경우 공동관리비 예산 지원

- ─ 현 행 : 1급 관사
- ─ 개 정 : 1급. 2급 관사

## □ 개정사유

- 지방재정법시행령이 '95. 5. 16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.

## □ 검토결과 (의견)

- 본 조례 개정(안)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의 준칙에 의해 공유 재산 관리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,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1995. 10. 30

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총무위원회

#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 경과

- 가. 제출자 : 화순군수
- 나. 제출일자 : '95. 8. 31
- 다. 회부일자 : '95. 9. 13
- 라. 상정일자 :   
    └ 1차 상정 : 제3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('95. 9. 18)  
    └ 재상정 : 제3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('95. 10. 30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이수철

- 나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시행령이 '95. 5. 16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.

- 다. 주요골자

- 중요재산의 범위 삭제 ( 한 제4조 )
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중요재산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규정 중요재산 범위 삭제

-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 범위 확대

- 기타지역 400㎡ 이하 토지 → 700㎡ 이하 토지 (안 제39조의 2)

- 관사운영비 부담재조정 (안 제56조)

- 전기, 수도요금 및 아파트 관사인경우 공동관리 예산지원  
    1급 관사 → 1, 2급 관사

## 3.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 개정(안)을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의준칙에 의해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내용으로 군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

#### 4. 질의답변요지

생략

#### 5. 토론요지

생략

#### 6. 심사경과

원안가결

#### 7. 첨부

가.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나. 신구조문 대비표